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선수금 관련 통지 내용과 방법 및 보관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나윤경
	담당부서 (과)	특수거래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남동일		연락처	044-200-4432
	과장	편유림		이메일	kftc_j533@mail. go.kr

2023. 05. 3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선수금 관련 통지 내용과 방법 및 보관의무									
	2.규제조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3.위임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6.14~2023.07.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납입횟수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통지 의무를 도입함. □ 법률에서 통지의무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함.									
	7.규제내용	□ (통지내용)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 (통지방법)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 (보관의무) 통지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부터 5년간 보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선불식 할부거래업자</td><td>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소비자가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선수금액, 납입횟수, 지급의무자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바, 다양한 수단으로 연 1회는 주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선수금 보전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73.91		373.91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 · 검사 · 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373.91	0	47.25		
	15.규제정비 계획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일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3. 지급의무자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연 1회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자동이체 등의 형식으로 재화 공급 이전에 장기간(5년~20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큰 분야임

* 선불식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선지급하고 장례·여행 등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의미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9개사(2023년 5월말 기준) △가입 소비자 757만명(2022년 9월말 기준)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납부하는 선수금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회원을 신고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납입금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탈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움
- **(개입 필요성)**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선수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계약 및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 또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연 1회 통지
	내용	선수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등의 정보를 연 1회 소비자에게 통지
규제대안2	대안명	연 2회 통지
	내용	선수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등의 정보를 연 2회(반기별) 소비자에게 통지
규제대안3	대안명	연 4회 통지
	내용	선수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등의 정보를 연 4회(분기별) 소비자에게 통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 계약 및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피해를 예방 ○ 통지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 및 사업자 비용부담이 가장 낮음	○ 대안2, 3에 비해 소비자 관심 유도 효과가 낮을 수 있음
규제대안2	○ 대안1에 비해 자주 통지함으로써, 더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	○ 대안1에 비해 통지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 및 사업자 비용 부담 증가
규제대안3	○ 대안2에 비해 자주 통지함으로써, 더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	○ 대안2에 비해 통지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 및 사업자 비용 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단체 2개사	통지의무 구체화 관련 검토 및 의 견제출 요청 (2023년 3~4월)	○ (통지내용) 상품명, 계약만기금액, 월납입 일자 및 금액, 납입 회차, 실납입금액, 선수금 보전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금액 조회방법 등을 안내하자는 의견 ○ (통지방법) 비용절감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노령 소비자를 고려하여 문자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병존 ○ (통지주기) 연 1회 통지 의견과 납부시마다 통지(월별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 ○ (보관의무) 발송이력관리제도 도입 필요 의견	○ (통지내용) 사업자단체 제시의견을 고려하여 선수금 보전기관 관련 정보(선수금 보전계약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또한 안내하도록 규정 ○ (통지방법) 소비자가 문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문자발송 비용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 ○ (통지주기)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 2회 외의 다른 통지횟수(연 1회, 연4회, 연 12회) 간에 유의미한 선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비자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된다는 점, 통지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 사업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연 1회로 설정 ○ (보관의무) 사업자단체 의견을 고려하여 보관의무 규정
소비자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2023.1.30~2.12, 8,300명 참여)	○ 연 2회(3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통지횟수(연 1회, 연4회, 연 12회) 간에는 유의미한 선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 2회 외의 다른 통지횟수(연 1회, 연4회, 연 12회) 간에 유의미한 선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비자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된다는 점, 통지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 사업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연 1회 통지하도록 한 대안1이 타당함

3. 규제목표

- 선수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등의 정보를 최소 연 1회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계약 및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 또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등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자신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및 선수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자동이체 등의 형식으로 재화 공급 이전에 장기간(5년~20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납부하는 선수금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바,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선수금 등 정보를 통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통지내용, 횟수, 방식, 보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바,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음
 - (통지내용) 사업자단체 제시의견을 고려하여 선수금 보전기관 관련 정보(선수금 보전계약 체결사실, 지급의무자)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
 - (통지방법) 사업자단체 측에 비용절감을 위해 문자,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노령 소비자를 고려하여 문자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였으나, 소비자가 문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문자발송 비용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
 - (통지주기) 사업자단체 측에 연 1회 통지 의견과 납부시마다 통지(월별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하였으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 2회 외의 다른 통지횟수(연 1회, 연 4회, 연 12회) 간에 유의미한 선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비자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된다는 점과 통지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 및 사업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연 1회로 설정
 - (보관의무) 발송이력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단체 의견

및 향후 법 집행을 고려하여 보관의무 규정

- ☐ 위와 같은 사항 및 대금의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의 시차가 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본 규제는 기술기준(기술규정),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사업자간 차별성이 없으므로,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제준수비용이 매출액의 0.1% 미만으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비용이 적어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한 표본모델·예비분석표모델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④ 대상 업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2023년 5월말 기준 79개)
⑤ 예비분석내용		☐ 가입자에게 연 1회 선수금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비용은 1인당 5원(카카오알림톡)~27원(LMS) 수준 ○ 한편, 상조상품의 가격은 상품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임 ☐ 따라서, 30년 간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 1인으로부터 얻는 매출(200만 원 이상) 대비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에 드는 비용(27원×30년=810원)은 매출 대비 0.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유연한 분류 체계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네거티브 리스트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사후 평가관리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비대상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외사례 없음

○ 타법사례

- 자본시장법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자가 매매내역에 대해 알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매월 마지막 날까지 서면·전화 등 합의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73조 등)

〈참고〉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다.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매월 마지막 날까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게 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언제든지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연 1회 통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73.91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연 1회 통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73.91		373.9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73.91		373.91

기업준비용	373.91	연간균등준비용	47.25
-------	--------	---------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이고, 매출 대비 큰 비용이 소모되지도 않으므로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집행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지내용 및 이력을 확인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기존의 조직과 인력만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3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23.3~5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방안 검토 및 보고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 기간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통지의무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모니터링(지속)

3. 규제 정비계획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을 허용함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를 허락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	23년9월

4. 종합결론

- 선불식 할부계약의 선수금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계약 및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 또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연 1회 통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73.91		373.9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73.91		373.91
기업순비용		373.91	연간균등순비용	47.25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연 1회 통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활동제목	선수금 관련 내용 연 1회 통지																				
비용항목	기타																				
비용	373,914,32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정률																				
산식	통지비용X통지횟수X통지대상자 수 (5*1*8830000)																				
근거설명	☐ 소비자에게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는 메일, 문자, 알림톡 (카카오톡)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건당 발송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알림톡 최저가격인 5원을 건당 발송 가격으로 가정 <table><tr><td>사이트명</td><td>다이렉트센드</td><td>메세지미</td><td>채널톡</td></tr><tr><td>메일</td><td>0.5원</td><td>미제공</td><td>미제공</td></tr><tr><td>SMS</td><td>9.5원</td><td>9.5원</td><td>8원</td></tr><tr><td>LMS</td><td>27원</td><td>29.1원</td><td>27원</td></tr><tr><td>알림톡</td><td>7.5원</td><td>7.3원</td><td>5원</td></tr></table>	사이트명	다이렉트센드	메세지미	채널톡	메일	0.5원	미제공	미제공	SMS	9.5원	9.5원	8원	LMS	27원	29.1원	27원	알림톡	7.5원	7.3원	5원
	사이트명	다이렉트센드	메세지미	채널톡																	
	메일	0.5원	미제공	미제공																	
	SMS	9.5원	9.5원	8원																	
	LMS	27원	29.1원	27원																	
	알림톡	7.5원	7.3원	5원																	
	☐ 한편, 2019년 이후 상조 가입자 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601만(' 19)→666만(' 20)→723만(' 21)→757만(' 22)] ○ 해당 기간 상조 가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CAGR)을 구하면 약 8.0%를 얻음 ○ 이를 근거로 2024년의 상조 가입자 수는 883만 명으로, 이후 매년 8.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	--------------------

명	
활동제목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
편의항목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자동이체 등의 형식으로 재화 공급 이전에 장기간(5년~20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정보제공이 강화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폐업, 부도 등의 부실 발생시 소비자들의 소비자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 지급 신청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